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4차 교육위원회)
2024. 11. 26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봉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4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아동·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·청소년들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,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환경조성 및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
-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현행 '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'에서 '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'로 변경하여 학교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까지 확대하고,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, 교통안전 환경조성 등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
(현행)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→

(개정안)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

○ 정의 규정에 ‘학생’, ‘승하차 구역’, ‘승하차 회차로’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)

○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
○ 실태조사 세부 내용 명시(안 제5조)

○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○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
○ 학생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

-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‘어린이 안전 종합계획(2022~2026)’을 수립하여 ‘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’을 추진하고 있고, 「도로교통법」과 「교통사고특례법」, 「특정범죄가중처벌법」 등을 개정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
-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(12세 이하)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

(2019년~2023년)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6명이 사망하고 2,711명이 다쳤으며, 하교 시간인 오후 시간대 보행사상자가 많았고 초등학교 중 저학년(1~3학년)이 보행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

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(12세 이하) 교통사고 현황(2024. 8)

발생년	사고건수	사망자수	부상자수
2019	567	6	589
2020	483	3	507
2021	523	2	563
2022	514	3	529
2023	486	2	523
계	2,573	16	2,711

자료: 도로교통공단



-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, 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의 13.0%가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였고, 어린이 보행사상자의 75.5%는 도로 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초등학교 저학년(1~3학년)이 고학년(4~6학년)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음

- 충청도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4건(부상)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

○ 또한, 개인형 이동장치¹⁾ 사용이 급증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2,389건에 달했으며, 이중 '20세 이하'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인 69.6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

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

(단위: 건, 명)

구분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사고건수	7,854	447	897	1,735	2,386	2,389
사망자	87	8	10	19	26	24
부상자	8,665	473	985	1,901	2,684	2,622

* 자료출처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4.7.8.)

-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「도로교통법」을 개정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, 안전모 착용과 한 대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
○ 현행 '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'는 교통안전 범위를 학교 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,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안전한 사용과 교통 규범 준수에 대한 교육과 지도 규정이 미흡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통안전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적극

¹⁾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와 제82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/h 미만, 총 중량 30kg 미만인 ①전동킥보드 ② 전동 이륜 평행차 ③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되며,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음.

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을 수립·시행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

- 따라서, 학생들의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, 교통안전 환경조성 등 학교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세부 규정 사항들을 추가하여 학생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정책 시행 근거 마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명을 현행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 - 다양한 교통수단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아동·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·청소년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학교 안·밖으로 확대·강화되고 있어, 조례명을 현행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 범위를 학교 안·밖으로 확대하고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규정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안 제2조에 ‘학생’과 ‘승하차 구역’ 및 ‘승하차 회차로’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
 - ‘학생’을 추가 신설한 것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, ‘승하차 구역’ 및 ‘승하차 회차로’에 대한 정의는 학생 교통안전 환경조성

규정 신설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한 학교 내 ‘승하차 구역’과 ‘승하차 회차로’가 학교 밖 승하차 구역 및 회차로와 구분하여 그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

○ 안 제4조에는 학생 교통안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- 본 조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,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, 교통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‘학생 교통안전 계획’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교통안전 정책과 세부 사업들이 충청북도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큰 틀 안에서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타당한 개정 사항이라고 사료됨

○ 안 제6조에는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-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고,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항은 학교를 출입하는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바람직한 개정 조치라 사료됨

○ 안 제7조에는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-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휴대폰화면을 보며 길을 걷는 ‘스몸비’(스마트폰좀비)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, 스몸비 현상이 교통사고 유발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또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

가하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

-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의식과 보행 안전 수칙 및 교통안전 수칙 준수도 중요하므로, 이 같은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키포드 등에 대한 안전 운행 및 보호장구 착용 교육, 교통법규 및 교통·보행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

○ 안 제8조에는 학생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- 본 조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 통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내 통학차량 승·하차 구역 설정 및 회차로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 내 승·하차 구역 설정과 회차로가 설치된다면 학교 주변 무분별한 통학 차량 주정차로 인한 도로 교통 혼잡과 승·하차 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통학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한 개정 조치라고 판단됨

○ 안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
-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지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자체,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. 따라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신설은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됨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생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과 실천 증진으로 학교 안·밖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수칙 및 보행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·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안전 시설 및 환경조성 등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규정 사항들을 확대·강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
- 또한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
- 다만, 학교 내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등·하교 길 안전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및 교통안전 관련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과 체계적인 실무협의회 운영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